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 관 의 장
--------	---------

**정기 제413호 2019. 3. 15(금)**

## 입 법 예 고

- |                      |   |         |
|----------------------|---|---------|
| 장수군 공고 제 2019 – 246호 |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1 |
| 장수군 공고 제 2019 – 278호 |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 6 |

## 고 시

- |                     |                                     |          |
|---------------------|-------------------------------------|----------|
| 장수군 고시 제 2019 – 28호 | 사창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 ..... 36 |
| 장수군 고시 제 2019 – 29호 | 신월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 ..... 38 |
| 장수군 고시 제 2019 – 32호 | 중상 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 ..... 41 |
| 장수군 고시 제 2019 – 33호 | 대덕 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 ..... 43 |
| 장수군 고시 제 2019 – 35호 | 소하천의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 45 |
| 장수군 고시 제 2019 – 36호 |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 ..... 46 |

## 공 고

- |                      |  |          |
|----------------------|--|----------|
| 장수군 공고 제 2019 – 238호 |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장수북동로(소로3-26))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 ..... 49 |
| 장수군 공고 제 2019 – 255호 | 장수 군계획시설(주차장/무릉고개 편의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 ..... 52 |

회 람								
--------	--	--	--	--	--	--	--	--

발행 장 수 군 ( 편집 기획조정실 ☎ 063-350-2065 )

장수군 공고 제2019-246호

##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장 수 군 수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수군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이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의 기타 수당에 월 기준액(900천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 있어 조례에 명시 되지 않아도 지급 될 수 있음으로 활동장려금을 삭제하기 위함

- 가. 조례명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를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로 명칭 변경
- 나. 제1조 중 “ 및 활동장려금 지급”을 “지급”으로 함(안 제1조)

- 다. 제2조제2항 활동장려금, 제4조제4항 장려급 기준, 제6조제2항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장려금 지급 중지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6조)
- 라. 별표 1의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한도액 삭제(안 별표 1)  
별표 2의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의 종류 삭제(안 별표 2)

## 2.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장수군수(참조: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5631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전화 : 063-350-2745, 팩스 063-350-2750)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별지 서식)

## 3.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보건의료원 진료팀(전화 063-350-27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붙임 :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별지 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를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및 활동장려금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장수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삭제) 지급  조례  제1조(목적) - ----- ----- ----- (지급) -----.
제2조(생략)  ② 활동장려금(활동장려금이란 진료활동 및 보건활동을 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수를 말하며 이하 “장려금”이라한다)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장수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 한다.	제2조(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4조(지급의 한도)  ④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제4조(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6조(지급 제한)  ②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장려금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	제6조(현행과 같음)  ② 삭제

장수군 공고 제 2019-278호

##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장 수 군 수

### 1. 자치법규명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 제정이유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상품권의 사용제한 및 환전대행가맹점 규정(안 제2조)
-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및 관리규정(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가맹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상품권 환전, 할인구매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 예산수반여부 : 여

#### 5. 의견제출

-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불임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일자리경제과)
    - 팩 스 : 063-350-5708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350-2182에 문의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별지 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 ①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호나목의 “환전대행가맹점”이란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를 말하며, 상인회에서는 노점을 대행하여 환전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장수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군수가 “장수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장수군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 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③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자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 유가증권 취급 규정」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4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 ① 군수는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장수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7조1호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환전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 ① 판매대행점은 위 · 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 및 단체 할인구매의 경우 분기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 및 단체의 경우 군수승인을 받아 구매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
-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 · 추석명절 및 재난 · 재해 시에는 상품권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구매의 경우 월 100만원, 연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③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0분의 10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른다.
- ④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상품권 훼손의 범위)**

조례 제7조제2항의 확인 가능한 범위란 상품권의 일련번호, 바코드 둘 중 하나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제13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장수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 한다.

**제14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장수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장수군과 장수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환전대행가맹점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장수군 일원으로 한다.
-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제5조(상품권 관리)

-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인 “군금고”에 보관하며, “군금고”에서 읍·면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을, 환전대행가맹점은 상품권 환전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

과 읍·면별 판매대행점, 환전대행가맹점은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6조(할인율)

-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5%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환전대행가맹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 제7조(수수료)

-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 환전대행수수료는 1000분의 ○○로 한다.
-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환전대행가맹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읍·면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 제10조(상품권 위·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장수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수군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성명 장수군수 (인)

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주소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 장수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 1. 장수사랑 상품권 ○○○○연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권면금액	발행수량	발행금액	비고
계	○○○만장	○○○억원	
5천원권	○○○만장	○○○억원	
1만원권	○○○만장	○○○억원	

### 2. 장수사랑 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 장수군, 한국조폐공사,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연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을 2000.00.00.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 인계인수자

– 장 수 군 : 직 성명 (서명)

–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상품권 판매내역

## 장수사랑 상품권 판매 정산서

( 년 월 일 현재 )

구분 금액 (천원)	상품권 인수 량		금월 판매량		금액 (천원)	상품권 매수 계	판매량 수	상품권 금액 (천원)	금액 (천원)	상품권 매수 계	판매량 수
	제	오천원 일만원권	제	오천원 일만원권							

※ 첨부 : 개인별 판매내역 1부

 상품권 회수 및 대금 지불 실적

구 분 상품권 회수 계	상품권 회수 매수(금월)		지 금 액 (천원)	상품권 회수 매수(금월)	잔 액 (천원)	비 고
	제	오천원 일만원권				

※ 첨부 : 취급점별 지급내역 1부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〇〇〇〇년  
〇월 말 현재 장수사랑상품권 판매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  
판매점 상성명 : (인)

장수군수 카하

[별지 제4호서식]

### 장수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업 종 및 취 급 품 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 남, 여 )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		(휴대폰 :	)
	주 소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수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장수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지정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  
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장수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 장수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계약서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장수군이 발행하는 장수사랑 상품권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장수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수군과 가맹점 간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맹점의 지정 · 변경 · 해지)

- ① 장수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가맹점 지정 취소)

장수군수는 가맹점이 「장수군 장수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계약기간)**

-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장수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장수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① 가맹점은 장수사랑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 ① 장수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장수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장수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413호

군 보

2019. 3. 15(금)

년 월 일

장수군

가맹점

상 호 :

주 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주 소 :

대표자 : 장수군수 (인)

대표자 :

[별지 제6호서식]

장수 - 호

### 장수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 상 호 :

○ 소재지 :

○ 성명 :

○ 생년월일 : (남, 여)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장수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수 군 수

### [별지 제7호서식]

## 장수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장수 - 호)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휴대폰 : )	
	주 소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수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३५०

신청인 : (서명 또는 암)

장수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

[별지 제8호서식]

### 장수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장수 - 호)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상호		성별	(남, 여)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주 소			
해지 사유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장수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구하

구비서류	가맹점 지정서 원본
------	------------

[별지 제9호서식]

### 장수사랑 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5천 원권			
1만 원권			

위와 같이 장수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장수 - 호)

청구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입금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	------	--	------	--

#### 판매대행점 규하

### 장수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 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5천 원권			
1만 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별지 제10호서식]

## 장수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권면금액	매 수	폐기방법	비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장수사랑 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기자 (담당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 : 직 성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명 (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	발행번호	발행매수	발행금액	보관 장소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5천원권						
	1만원권						

[별지 제12호서식]

### 장수사랑상품권 단체 구매 신청서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구매신청금액 :

법인·단체명	오천원권(매)	일만원권(매)	금액	비고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수사랑상품권 단체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서명 또는 인)

#### 판매대행점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단체등록증 사본 1부.
------	-------------------------------------

[별표 1]

## 장수사랑 상품권 이용규약(제8조제1항과 관련)

###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장수군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장수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장수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장수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별표 2]

##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제6조제2항과 관련)

### 제1조(총칙)

장수군에서 가맹점으로 지정한 업소는 장수사랑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 제2조(가맹점의 지정 · 변경 · 해지)

- ① 장수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가맹점 지정 취소)

장수군수는 가맹점이 「장수군 장수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4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장수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4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 제6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환전청구 및 결제)

-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 한다.

####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① 가맹점은 장수사랑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 ⑤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상품권의 잔액반환)

-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장수군 고시 제2019-28호

## 사창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사창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사창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 생활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총 사업비 : 484백만원[국비]339(70%) 군비145(30%)]
4.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 사창마을 일원
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한반도 문화센터 조성, 공동생활 홈 조성
  - 지역역량강화 : 리더교육, 선진지 견학, 문화예술 동아리지원, 무병장수 프로그램, 마을 소식지 등

##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총 액	연차별			비고
		계	2018	2019	
합 계	484,000	484,000	110,000	374,000	
○ H/W 사업비	383,549	383,549	60,000	323,549	
- 기초생활기반확충	383,549	383,549	60,000	323,549	
• 한반도 문화센터 조성	146,063	146,063	60,000	86,063	
• 공동생활홈 조성	237,486	237,486	-	237,486	
○ 지역역량강화	42,000	42,000	6,000	36,000	
○ 부대비용 등	58,451	58,451	44,000	14,451	

7. 시행자 : 장수군수(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8. 시행기간 : 2018. 01.~2019. 12. (2년)

9. 사업효과 : 주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활성화 기대

장수군 고시 제2019-29호

## 신월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신월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신월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 생활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총 사업비 : 486백만원[국비340(70%) 군비146(30%)]
4.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백운리 신월마을 일원
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목적생태주차장, 새보름 악자지껄 이야기길 등
  - 지역경관개선 : 신월두부가공시설리모델링, 원씨열녀비전통경관 개선, 솔정역사이미지 복원 등

- 지역역량강화 : 주민스스로 체험농장 조성, 주민스스로 작약꽃 단지조성, 아름다운 꽃과나무 조성, 문화복지 프로그램 및 선진지 견학 등

##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총 액	연차별			비고
		계	2018	2019	
합 계	486,000	486,000	110,000	376,000	
○ H/W 사업비	354,113	354,113	37,000	33,314	
- 기초생활기반확충	65,314	65,314	32,000	33,314	
동화천변휴양 체험마을조성	다목적생태 주차장	50,794	50,794	32,000	18,794
마을화합의 이야기만들기	새보름 와자지껄 이야기길	14,520	14,520	-	14,520
- 지역경관개선		288,799	288,799	5,000	283,799
동화천변휴양 체험마을조성	신월두부가공 시설리모델링	28,709	28,709	-	28,709
	동화천 친수 공간설치	147,239	147,239	-	147,239
아름다운역사 문화경관조성	원씨열녀비 전통경관 개선	110,925	110,925	5,000	105,925
	솔정역사 이미지 복원	1,926	1,926	-	1,926
○ 지역역량강화		71,000	71,000	27,000	44,000
○ 부대비용 등		60,887	60,887	46,000	14,887

7. 시행자 : 장수군수(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8. 시행기간 : 2018. 01.~2019. 12. (2년)

9. 사업효과 : 지역경관조성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활성화 기대

장수군 고시 제2019-32호

## 중상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중상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중상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 생활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총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350(70%) 군비150(30%)]
4.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중상마을 일원
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야외화장실 철거 및 신축, 마을당산나무쉼터조성 등

- 지역역량강화 : 문화복지 프로그램 및 선진지 견학, Red Food 축제지원, 와룡천 하천정화 캠페인 등

##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총 액	연차별			비고
		계	2018	2019	
합 계	500,000	500,000	37,510	462,490	
○ H/W 사업비	386,896	386,896	0	386,896	
- 기초생활기반확충	386,896	386,896	0	386,896	
• 와룡천 하천정비	80,000	80,000	0	80,000	
• 야외화장실 철거 및 신축	36,547	36,547	0	36,547	
•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321,151	321,151	0	321,151	
• 마을당산나무 쉼터조성	11,194	11,194	0	11,194	
• 저온저장고철거 (상리)	18,004	18,004	0	18,004	
○ 지역역량강화	54,000	54,000	5,000	49,000	
○ 부대비용 등	59,104	59,104	32,510	26,594	

7. 시행자 : 장수군수(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8. 시행기간 : 2018. 01.~2019. 12. (2년)

9. 사업효과 :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활성화 기대

장수군 고시 제2019-33호

## 대덕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대덕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대덕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 생활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총 사업비 : 489백만원[국비]342(70%) 군비147(30%)]
4. 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대덕마을 일원
5.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활력충전소, 마을 역사박물관, 다목적 광장 조성
  - 지역역량강화 : 문화복지 동호회 추진, 자격증 취득과정, 선진지 등

##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구 분	총 액	연차별			비고
		계	2018	2019	
합 계	489,000	489,000	32,270	456,730	
○ H/W 사업비	382,436	382,436	0	382,436	
- 기초생활기반확충	382,436	382,436	0	382,436	
• 마을역사박물관 조성	74,000	74,000	0	74,000	
• 활력충전소 조성	252,433	252,433	0	252,433	
• 다목적 광장 조성	56,003	56,003	0	56,003	
○ 지역역량강화	39,000	39,000	0	39,000	
○ 부대비용 등	67,564	67,564	32,270	35,294	

7. 시행자 : 장수군수(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8. 시행기간 : 2018. 01. ~ 2019. 12. (2년)

9. 사업효과 :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활성화 기대

장수군 고시 제2019-35호

## 소하천의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서류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장 수 군 수**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m)	지정(변경 · 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금강	반송천	장계면 명덕리 160-3	장계면 명덕리 1913-1 (평지천 합류)	1.51 (당초 1.52, ▼0.01)	국도 26 호선 도로선형개선 사업에 따른 하류일부 변경 (경미한 사항)

**열람서류:** 소하천 위치도(축척 5천분의 1~5만분의 1 지형도)

**비고:**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난에는 지번이나 연결되는 (소)하천명을 적는다.

장수군 고시 제 2019-36 호

##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폐지)하였음을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장 수 군 수**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폐지) 사유
금강	반송천	1363-2도	20	국도 26 호선 도로선행개선 사업에 따른 하류 일부 변경 (경미한 사항)
		1366-6도	24	
		1366-7답	90	
		1421-3대	2	
		1426-2도	63	
		1429-3전	12	
		1429-4도	23	
		1430-5도	20	
		1723-48천	53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 · 폐지) 사유
금강	반송천	1745도	3	국도 26 호선 도로선형개선 사업에 따른 하류 일부 변경 (경미한 사항)
		1766도	3	
		1912답	234	
		1919-2답	13	
		1920답	110	
		2120구	3	
		2121도	4	
		2122구	5,875	
		2128구	1,940	
		953-4답	6	
		968-1전	6	
		971-1전	2	
		971-2전	15	
		973-1임	34	
		0-22가	468	
		169-6답	166	
		169-7전	247	
		169-8답	277	
		169-4답	91	
		169-5답	3	
		169답	226	
		170-5답	162	
		172-10답	2	
		172-11답	33	

수계(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소재지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지번 및 지목	면적(m <sup>2</sup> )	결정(변경 · 폐지) 사유
금강	반송천	1723-50천	1,633	국도 26 호선 도로선행개선 사업에 따른 하류 일부 변경 (경미한 사항)
		172-3구	171	
		172-4답	11	
		1728도	95	
		174-2답	55	
		2122구	2,502	
		3-4장	21	
		953-10답	48	
		953-11답	4	
		신103-102임	295	
		산103-69도	83	
		1923답	38	
		1922답	33	
		1921답	55	
		1911답	531	
		1910답	679	
		1909답	471	
		1362-3도	16	
		계	16,971	

**첨부서류**

1.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장수군 공고 제 2019-238호

##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장수북동로(소로3-26)) 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장수 군계획시설(도로/장수북동로(소로3-26))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장수군수

### 1. 인가신청의 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명 칭	사업규모	비고
군계획시설사업(장수)	장수 북동로 개설사업 (소로3-26)	도로개설 L=238m, B=7.5m	

다.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장수군수

○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12.30.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따로 붙임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군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3. 의견제출

사업 시행지구의 토지 ·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건설경제과(350-2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가. 장수 북동로 개설사업(소로3-2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장수읍 장수리	447 (447-4) (447-5)	답	915	171	박경립	전주시 덕진구 인후5길 15		
2	장수읍 장수리	447-3 (447-6)	답	1,430	178	박경립	전주시 덕진구 인후5길 15		
3	장수읍 장수리	448-4 (448-9)	답	752	111	권대승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36길 15-8 102호(공간행복)		
4	장수읍 장수리	449-1 (449-14)	답	1,630	303	장 수 군			
5	장수읍 장수리	462-6 (462-9)	대	286	49	우태곤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2로 142, 101호(풍동)		
6	장수읍 장수리	462-7 (462-10)	답	5	1	장 수 군			
7	장수읍 장수리	445 (445-3) (445-5)	답	2,083	214	장 수 군			
8	장수읍 장수리	449-6 (449-16)	대	674	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장수읍 장수리	437-2 (437-3)	답	1,833	345	김미라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봉천우성 APT 104동 2009호		
10	장수읍 장수리	439-5 (439-10)	답	2,332	16	장 수 군			
11	장수읍 장수리	439-6 (439-11)	답	263	142	장 수 군			

장수군 공고 제 2019-255호

## 장수 군계획시설(주차장/무릉고개 편의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장수 군계획시설(무릉고개 편의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08일

장 수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115-4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주차장 : 노외주차장]
- 명 칭
  - 무릉고개 편의시설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노외주차장 : 9,180m<sup>2</sup>(도로 7,680, 임야 1,500)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장수군수
-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5. 사업시행기간

- 소로3-9 : 2018.03.28. ~ 2018.11.30.

## 군보발행안내

###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